

2019년 비정규직 규모와 특징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김복순 · 임용빈*

I. 머리말

통계청은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2002년 7월)’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범주에 따라 2003년부터 임금근로자를 근로형태별로 분류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_부가조사를 매년 8월 실시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매년 11월말 공표되는 원시자료를 이용해 매년 1월호에 비정규직 분석을 수록하였다. 2019년 조사결과는 기간제의 경우 병행조사로 인한 변화가 있어 다른 해와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어디에서 기간제가 새롭게 증가 또는 발굴되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원고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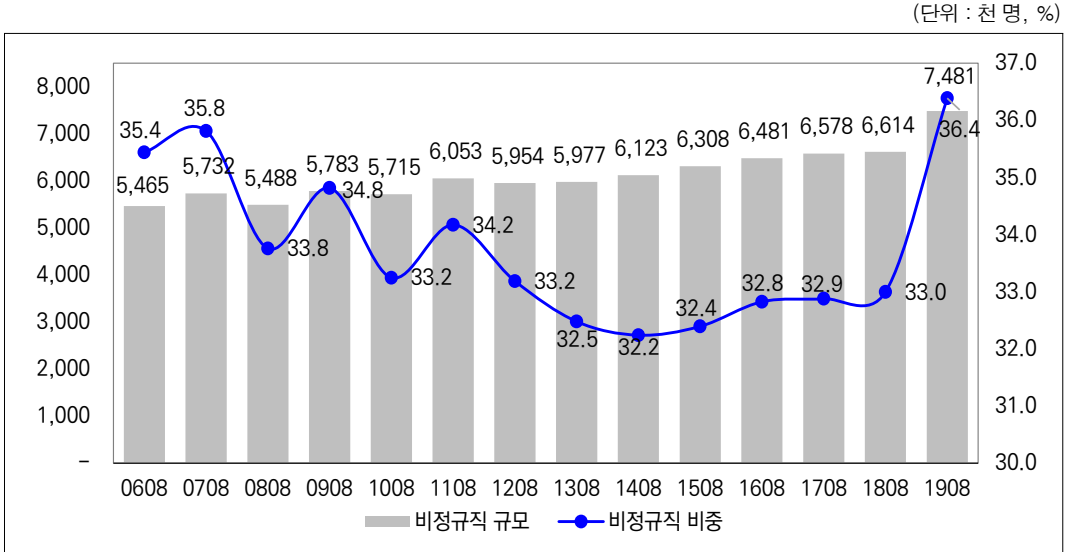
II. 2019년 비정규직 규모와 비정규직여부별 · 종사상지위별 규모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2003년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46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6%였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4년 32.2%까지 감소세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33%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를 시작한 지 16년이 흐른 2019년 비정규직은 700만 명을 훌쩍 넘는 748만 명으로 전년대비 8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19년부터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분류 기준 개정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을 기존 문항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다. 현행 조사표에는 없던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

*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esaram@kli.re.kr). 임용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bim@kli.re.kr).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사에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9년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 여부와 ‘경제적 위험과 권한형태(종사상지위 분류)’에 따른 분류)를 결부하여 살펴보면, 늘어난 비정규직 867천 명 중 ‘비정규_상용’이 407천 명 증가, ‘비정규_임시·일용’이 460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늘어난 또는 발굴된 비정규직은 종사상지위로 보면 상용직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임시·일용직에서 절반 좀 넘게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근로자는 85천 명 증가에 그쳐 2018년 304천 명 증가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정규_상용’ 근로자 비중은 56.7%로 전년동월 대비 1.0%p 감소하였다.

‘비정규_상용’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한 반면, ‘정규_상용’의 감소는 주로 20~30대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30대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6천 명 감소했지만 ‘정규_상용’은 더 큰 폭(74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 1) 취업자의 경제적 위험과 권한형태(ICSE-93)에 따라 분류되는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고용원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며, 국제기준(ICSE-93)에 따르고 있다. ‘종사상지위’와는 다른 개념인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는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1〉 비정규직여부별 ·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경제성장률		5.8	3.0	0.8	6.8	3.7	2.4	3.2	3.2	2.8	2.9	3.2	2.7	2.0p
취업자	전체	370	243	-27	417	569	337	393	670	186	327	208	3	452
	임금근로자	586	252	351	581	526	226	462	589	483	269	263	39	514
	상용직	565	348	354	681	593	524	613	355	468	253	467	278	493
	임시직	33	-60	139	11	-72	-115	-89	253	-7	82	-167	-187	-2
	일용직	-13	-36	-142	-111	4	-183	-62	-20	22	-66	-37	-52	24
	비임금	-216	-8	-378	-163	44	110	-69	81	-297	58	-54	-36	-62
	고용원 있는 자영업	-107	-33	-9	-16	18	48	-33	86	11	-5	-38	71	-116
	고용원 없는 자영업	12	-10	-271	-101	46	54	-16	-11	-205	72	27	-124	97
	무급가족종사자	-121	35	-98	-46	-20	8	-20	6	-103	-8	-43	16	-44
임금근로자	정규직	318	496	57	649	187	326	439	443	297	96	166	3	-353
	정규_상용	323	575	331	447	404	485	595	351	412	196	462	304	85
	정규_임시	13	-125	-250	231	-191	-74	-152	96	-82	-71	-310	-283	-412
	정규_일용	-18	46	-25	-29	-26	-86	-4	-3	-32	-29	14	-18	-26
	비정규직	268	-244	294	-68	339	-99	23	146	186	172	97	36	867
	비정규_상용	242	-227	22	233	189	39	19	4	57	56	4	-26	407
	비정규_임시	21	65	390	-220	119	-41	62	157	75	153	143	96	410
	비정규_일용	5	-82	-117	-82	30	-97	-58	-16	54	-36	-50	-34	50

주 : p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경제전망보고서(20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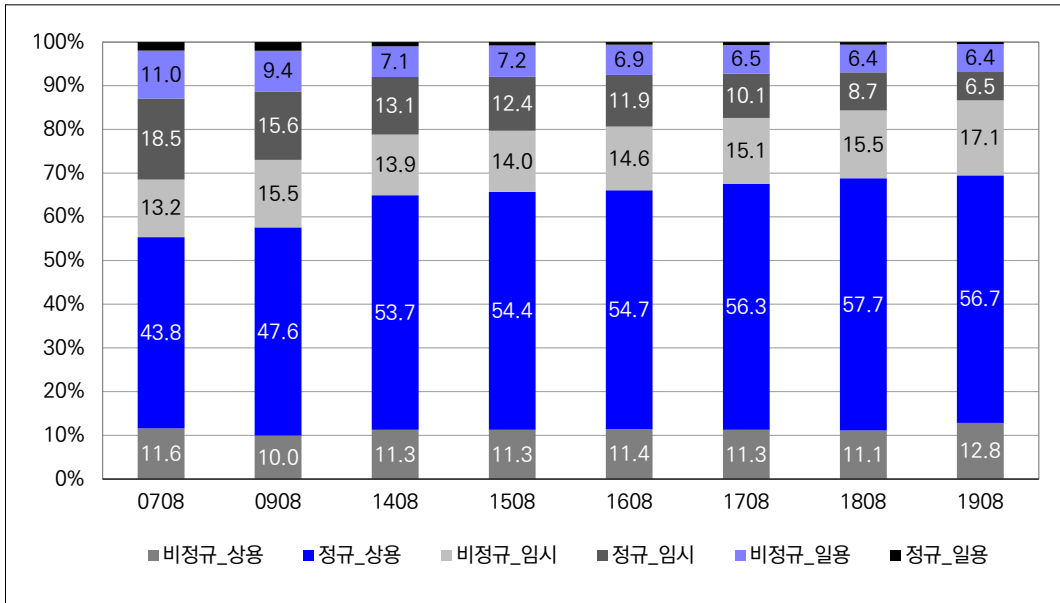
증가한 ‘비정규_상용(68천 명)’의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였고, 이들 중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32천 명으로 나타나 통계청에서 밝힌 병행조사로 인해 ‘정규_상용’에서 ‘비정규_상용’으로 새롭게 포착된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2019년에는 재정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확대집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다 보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170천 개 증가)는 고용계약이 정해진 1년 미만 ‘비정규_임시(135천 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비정규_상용’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97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천 명), 숙박음식점업(50천 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07천 명 증가하였지만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대 후반에 증가한 ‘비정규_상용’은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15천 개)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숙박음식점업(18천 개)에서 늘어난 반면 65세 고령층에서는 ‘비정규_상용’ 일자리가 70천 개 늘어났으며, 이들은 주로 부동산업(19천 개)과 사업시설서비스업(9천 개)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변화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병행조사로 인해 ‘비정규_상용’의 변화와 연관이 깊은 ‘정규_상용’ 근로자는 제조업(-104천 명), 공공행정(-94천 명) 부문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비정규직여부별·종사상지위별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주: 비정규_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407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289천 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2> ‘비정규직여부별·종사상지위별’, 연령별 고용증감

(단위 : 천 명)

	임금근로자				비정규_상용				정규_상용				비정규_임시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전체	269	263	39	514	56	4	-26	407	196	462	304	85	153	143	96	410
15~19세	5	-18	-40	-10	-2	1	-3	-1	12	5	-8	-2	22	-14	-8	-6
20~24세	3	-27	-119	16	3	-34	-18	17	-14	33	-54	-22	2	61	-14	55
25~29세	39	70	98	62	40	-19	-20	68	7	100	81	-26	-9	23	31	61
30대	-98	10	-35	-26	-37	-3	28	59	-15	74	30	-74	-0	-9	-9	39
40대	-33	5	-74	9	2	14	-19	63	44	98	53	19	11	-15	-40	46
50대	153	106	43	188	-2	32	9	86	130	92	114	154	31	47	5	52
60~64세	110	54	97	106	9	29	1	46	21	34	70	34	43	-8	48	27
65세 이상	91	63	69	170	44	-16	-4	70	13	25	19	1	52	58	83	1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Ⅲ. 2019년 비정규직 유형별 규모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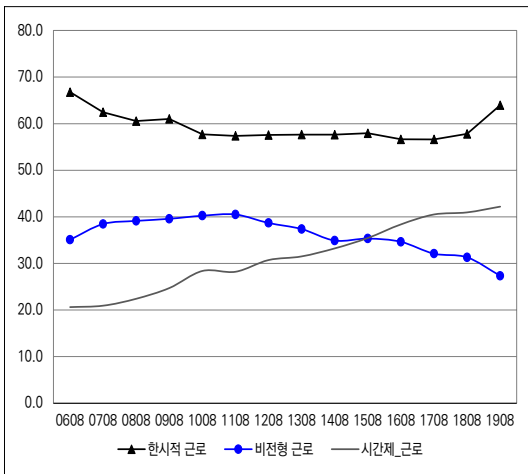
1.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의하면,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로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²⁾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이하 반복 갱신),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이하 계속근무 기대불가)로 구분하고 있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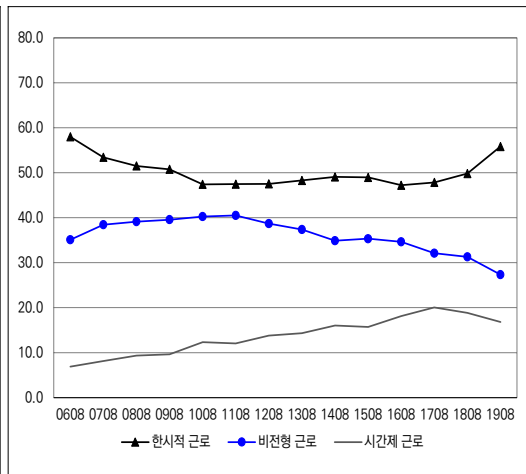
[그림 3] 비정규직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



[그림 4] 비정규직 유형별 비중 추이(중복제거)

(단위 : %)



주: 1)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와 비중은 유형 간 중복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2)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기준(특고)가정내)파견, 용역)일일)한시적)시간제)에 따라 중복을 제거하면 우측의 그림이 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조사하여 집계한 것이다.

근로자를 의미한다. 동일 회사에 동일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을 유형별로 보면, 기간제를 포함하고 있는 한시적 근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간제가 큰 폭으로 증가한 2019년을 제외하면 한시적 근로는 최근 횡보하는 모습이다.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가정내·일일근로를 포함한 비전형 근로는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에는 시간제 근로와 역전되어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간제 근로는 한시적 근로와 비전형 근로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그림 3]과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규모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중복되어 집계되고 있다. 각 비정규직이 몇 가지 비정규직 유형의 집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때 장점이 있는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파견직인 사람은 파견근로자로 보는 현실의 관행도 고려해 비정규직 유형별 규모를 중복제거 후 볼 필요도 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 권고대로 통계청 보도자료에 실린 중복제거 우선순위를 반영해 시계열을 작성(특수형태근로>가정내 근로> 파견·용역 근로>일일 근로>한시적 근로>기간제 근로)한 결과가 [그림 4]와 <표 4>에 제

<표 3>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및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규 모				증 감			
	2016. 8	2017. 8	2018. 8	2019. 8	2016. 8	2017. 8	2018. 8	2019. 8
비정규직	6,481	6,578	6,614	7,481	172	97	36	867
① 한시적 근로	3,671	3,725	3,823	4,785	16	54	98	962
기간제	2,939	2,929	3,005	3,799	67	-10	75	795
반복갱신	320	473	464	607	12	153	-9	143
기대불가	412	322	355	379	-63	-90	32	24
② 비전형 근로	2,245	2,112	2,071	2,045	16	-133	-41	-26
파견	201	188	189	182	-10	-13	1	-7
용역	702	694	596	615	42	-8	-98	20
특고	502	497	506	528	0	-5	8	23
가정	42	30	53	46	-13	-12	23	-7
일일	874	801	801	748	-12	-73	0	-53
③ 시간제 근로	2,488	2,663	2,709	3,156	251	176	45	447

주: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와 증감은 유형 간 중복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4〉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및 증감 추이(중복제거)

(단위 : 천 명, %)

	규 모					증 감				
	2009. 8	2016. 8	2017. 8	2018. 8	2019. 8	2009. 8	2016. 8	2017. 8	2018. 8	2019. 8
비정규직	5,783	6,481	6,578	6,614	7,481	294	172	97	36	867
① 한시적 근로	2,936	3,061	3,148	3,296	4,177	110	-28	87	148	881
기간제	2,317	2,385	2,409	2,552	3,285	333	16	24	143	732
반복갱신	149	292	442	420	544	-185	18	151	-22	123
기대불가	470	384	296	323	349	-38	-62	-88	27	26
② 비전형 근로	2,847	3,420	3,430	3,318	3,304	141	16	-133	-41	-26
파견	165	201	188	189	182	26	-10	-13	1	-7
용역	616	702	694	596	615	-16	42	-8	-98	19
특고	644	502	497	506	528	42	0	-5	8	23
가정	84	42	30	53	44	24	-12	-12	23	-8
일일	779	798	703	728	676	65	-4	-95	25	-52
③ 시간제 근로	559	1,175	1,319	1,248	1,259	44	185	143	-71	11

주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증감은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의 합계와 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5〉 기간제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 고용계약기간별 규모 및 증감

(단위 : 천 명, %)

	규 모				증 감				비 중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기간제	2,939	2,929	3,005	3,799	67	-10	75	795	100.0	100.0	100.0	100.0
일용직(1개월 미만)	196	197	195	320	6	1	-1	125	6.7	6.7	6.5	8.4
임시직	1,079	1,168	1,323	1,704	50	90	155	381	36.7	39.9	44.0	44.9
1~6개월 미만	296	301	340	400	-6	5	39	60	10.1	10.3	11.3	10.5
6개월~1년 미만	783	867	983	1,304	56	85	115	321	26.6	29.6	32.7	34.3
상용직	1,664	1,565	1,486	1,775	12	-100	-78	289	56.6	53.4	49.5	46.7
1년	1,230	1,173	1,105	1,346	-46	-57	-68	241	41.9	40.0	36.8	35.4
	(841)	(813)	(788)	(869)	(-7)	(-28)	(-25)	(81)	-	-	-	-
1년초과~2년	262	218	214	250	32	-44	-4	36	8.9	7.4	7.1	6.6
2년초과~3년	86	94	82	88	16	8	-12	6	2.9	3.2	2.7	2.3
3년초과	86	79	84	91	9	-6	5	7	2.9	2.7	2.8	2.4

주 : () 안은 고용계약기간 1년이 지났음에도 연속 중인 기간제_상용직 근로자 수와 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되어 있다.³⁾

- 3) 2018년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TF에서 비정규직 유형간 중복집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조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통계발표는 노사정이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7만 명 늘어났고, 비정규직을 유형별로 중복집계하든 중복제거하여 집계하든 이 증가폭의 상당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에 기인하고 있다. ILO의 국제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조사지침은 정년이나 은퇴 말고 고용계약이 종료될 기간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고용계약이 종료될 사건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의 종료나 대체 근로의 종료 등)도 ‘기간제 근로자’로 조사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변화를 보면(표 5 참조), 감소하던 상용직이 2019년에는 289천 명 증가한 것과 임시직(381천 명)·일용직(125천 명)도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계약기간이

〈표 6〉 기간제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산업별 고용증감

(단위: 천 명)

	기간제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년)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 체	-9	76	795	-100	-78	289	241	90	155	381	1	-1	125
농림어업	12	4	11	3	7	-3	-2	4	1	8	5	-4	6
건설업	45	22	65	16	-18	9	-1	8	20	9	21	20	47
제조업	-36	-32	116	-34	-27	64	52	3	-4	36	-5	-1	16
서비스업	-31	82	594	-84	-37	215	188	75	135	326	-22	-16	53
도소매업	-15	1	49	-8	-8	25	34	4	2	26	-11	7	-2
운수창고업	0	18	25	0	10	1	1	-1	11	15	1	-3	9
숙박음식점업	-19	20	80	-10	-2	30	37	2	26	30	-11	-4	20
정보통신업	-9	-8	7	-3	-17	14	8	-5	10	-7	-1	-1	0
금융보험업	8	5	-11	7	-2	-12	-8	1	7	1	-	-	-
부동산업	-2	1	24	-2	-7	24	22	1	10	-1	-1	-2	1
전문과학 등	-11	4	53	-16	7	35	26	4	-4	16	1	1	2
사업시설관리 등	-28	-63	60	-37	-33	10	-1	10	-23	37	-1	-7	13
공공행정 등	46	16	47	7	-3	-13	-8	37	23	56	2	-4	4
교육서비스업	-2	-12	62	13	-20	10	9	-14	7	50	-1	1	2
보건, 사회복지	0	103	129	-25	39	71	54	25	67	58	0	-3	0
예술스포츠여가	5	-5	39	-6	-1	13	8	9	-0	23	2	-4	3
협회단체 등	-5	7	14	-5	5	1	3	2	-2	16	-2	4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각각 합리적인 중복제거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중복제거는 비정규직간 중복제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비정규직 집계시 중복을 제거하고 각 비정규직들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특수고용형태>가정내>파견, 용역>일일>한시적>시간제’ 순으로 중복제거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복집계된 수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1년 이상인 상용직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고용계약기간이 1년인 상용직이 1,346천 명으로 241천 명 증가했다.

기간제_상용직 증가와 더불어 기간제_임시·일용직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은 1,704천 명으로 381천 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321천 명이 고용계약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_일용직도 320천 명으로 125천 명이 증가하였다.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조업에서도 11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조업 부문에서 임금근로자가 5천 명 증가에 그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_상용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1천 명), 제조업(64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5천 명) 부문에서 증가하였고, 전통적인 내수 의존 산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25천 명, 30천 명 증가하였다. 기간제_임시직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8천 명)과 공공행정(56천 명) 부문에서 증가폭이 컸으며, 이는 2019년 확대시행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_일용직은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 중복집계방식으로 인해 비전형·시간제 근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증가

우리나라 비정규직 유형별 정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의거하여 서로 배타적이지 않게 조사되어 중복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비전형 근로 유형에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한시적 근로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에서도 관찰된다는 것이다. <표 4>와 <표 8>을 보면 비정규직 유형별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유형별 기간제 근로자 수를 비교할 수 있다. ILO 개정안을 제대로 반영하였다면 한시적 근로의 반복갱신·기대불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계되어 결과적으로 반복갱신·기대불가 근로자는 감소해야 하지만 조사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을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는 2,045천 명이었으며,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514천 명으로 62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 근로 615천 명 중 기간제 근로자는 382천 명으로 비전형_기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전형 근로_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1년 미만 고용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주로 사업시설서비스업(16천 명)과 건설업(17천 명) 부문에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시간제 근로자는 3,156천 명이었으며,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1,269천 명으로 335천 명이 증가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40.2%가 기간

제 근로자인 셈이다. 시간제 근로_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3천 명), 교육서비스업(55천 명), 숙박음식점업(47천 명), 공공행정(42천 명) 부문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LO의 개정안을 반영한 조사문항에는 고정기간 근로자, 단기·임시 등의 구분을 위해 고용계약기간, 고용예상기간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현행조사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했다.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반복갱신 근로자도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시적 근로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추세를 벗어나 64.0%(6.2%p ↑)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ILO 개정안대로 조사문항이 제대로 수정되었다면 현행 반복갱신이나 기대불가 근로자는 상당수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어 이들의 규모가 줄어들었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행상 파견·용역 근로를 포함한 비전형 근로의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전형 근로_기간제 근로자도 대폭 증가했어야 한다. 하지만 병행조사 결과 비전형 근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증가해야 하지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이 이들 항목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7〉 비정규직 유형별 기간제 근로자 규모·증감·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규모				증 감				비 중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한시적 근로	3,671	3,725	3,823	4,785	16	54	98	962	100.0	100.0	100.0	100.0
기간제	2,939	2,929	3,005	3,799	67	-10	75	795	45.3	44.5	45.4	50.8
반복갱신	-	-	-	-	-	-	-	-	-	-	-	-
기대불가	-	-	-	-	-	-	-	-	-	-	-	-
비전형 근로	2,245	2,112	2,071	2,045	16	-133	-41	-26	100.0	100.0	100.0	100.0
비전형 근로_기간제	554	520	452	514	52	-34	-68	62	24.7	24.6	21.8	25.2
파견_기간제	98	102	94	90	0	4	-8	-3	48.5	54.1	49.6	49.6
용역_기간제	439	401	337	382	50	-37	-64	45	62.5	57.8	56.6	62.0
특고_기간제	18	16	16	33	5	-2	-0	17	3.6	3.3	3.2	6.3
가정_기간제	-	1	5	10	-4	1	4	4	-	4.3	10.0	20.9
일일_기간제	-	-	-	-	-	-	-	-	-	-	-	-
시간제	2,488	2,663	2,709	3,156	251	176	45	447	100.0	100.0	100.0	100.0
시간제_기간제	781	813	935	1,269	71	33	121	335	31.4	30.5	34.5	40.2

주: 비중은 한시적, 비전형, 시간제 근로자 중 유형별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Ⅳ.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1. 근로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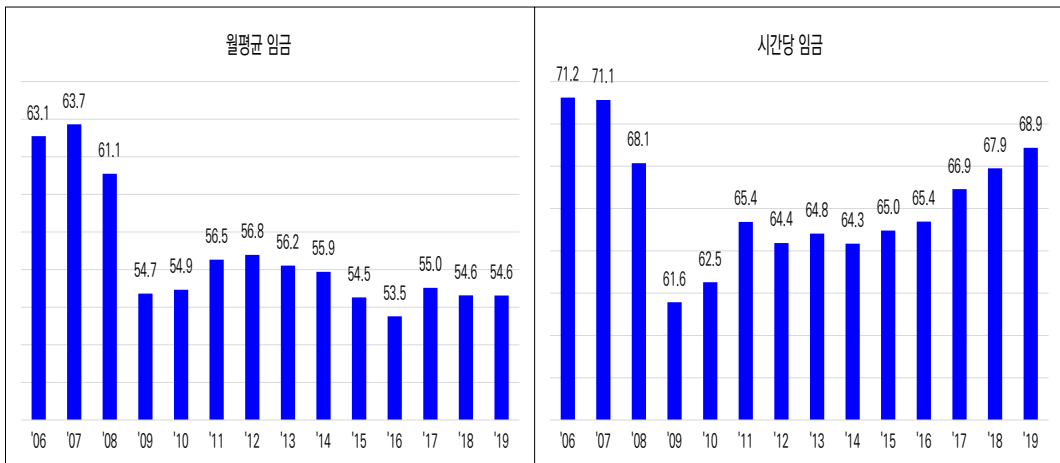
2018년 당시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에서 개선이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가입을 비롯한 복지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년에 이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근로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수준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19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하 월 임금)은 264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각각 317만 원, 173만 원으로 모두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정규직 임금=100.0)은 54.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평소 근로시간을 고려하여⁴⁾ 시간당 임금(이하 임금)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7,225원)이 5.4%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11,863원)은 6.9% 증가하여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68.9%로 2007년(71.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

(단위 : %)



주 :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4)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 근로시간 * 30.4/7).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을 보면 한시적 근로자(71.3%→69.3%)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2018년에 임금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던 ‘반복갱신’의 시간당 임금은 13,741원으로 2017년(14,589원)보다 5.8% 감소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기간제의 시간당 임금은 11,861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로 증가폭이 둔화되어(2017년 7.5% 증가)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주었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초과관찰됨에 따라 전년도와의 비교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비전형근로자의 경우 파견, 용역,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의 임금수준이 개선되면서 상대임금수준(62.7%→65.3%)이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전형 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데 기여했던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임금(13,076원)이 전년대비 13.2% 증가하는 등(2017년 5.8% 감소) 모든 비전형 고용형태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이 임금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가정내 근로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8,404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2017년 7,600원).

기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은 2012년 53.5%까지 감소한 이후로 완만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을 이어오면서 2019년 정규직 대비 64.3%의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월 임금 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2017년 28.8%에서 2019년 29.3%로 30%에 가깝게 증가했다.

〈표 8〉 근로형태별 시간당 상대임금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1.1	68.1	61.6	62.5	65.4	64.4	64.8	64.3	65.0	65.4	66.9	67.9	68.9
한시적 근로	76.2	72.8	64.1	66.2	69.4	69.1	69.1	67.7	67.0	68.9	69.7	71.3	69.3
기간제	76.5	75.2	65.6	65.8	69.1	69.5	69.3	67.8	67.9	69.7	69.5	70.6	68.9
반복갱신	98.0	88.5	87.0	100.5	93.7	86.6	96.1	85.7	79.3	78.6	81.0	89.3	79.8
기대불가	48.1	51.7	48.8	46.5	52.3	54.2	50.9	51.5	53.2	56.1	54.8	53.8	57.6
비전형 근로	60.4	59.5	57.1	57.6	58.6	58.8	58.3	60.8	60.3	61.2	63.9	62.7	65.3
파견	70.8	71.5	69.6	64.9	66.9	73.6	62.8	60.7	65.7	67.3	70.3	69.8	69.3
용역	48.6	49.2	48.0	50.4	50.0	49.1	52.0	51.8	53.0	54.6	55.2	57.4	58.8
특수형태근로	80.2	79.9	75.6	77.1	82.4	78.2	76.1	84.1	79.2	78.1	79.4	70.7	75.9
가정 내 근로	34.6	36.5	37.0	31.3	34.9	41.6	33.3	27.9	43.3	43.2	46.2	46.5	48.8
일일근로	52.0	51.3	47.7	49.0	47.5	50.0	51.5	53.4	54.5	55.3	60.5	60.3	62.2
시간제 근로	66.8	64.9	56.4	55.6	59.4	53.5	55.5	54.0	57.8	59.2	59.6	62.2	64.3
비정규직(기간제 제외)	66.8	62.7	57.7	60.0	62.4	60.0	60.9	61.5	62.5	61.8	64.8	65.7	68.9

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근로형태별 시간당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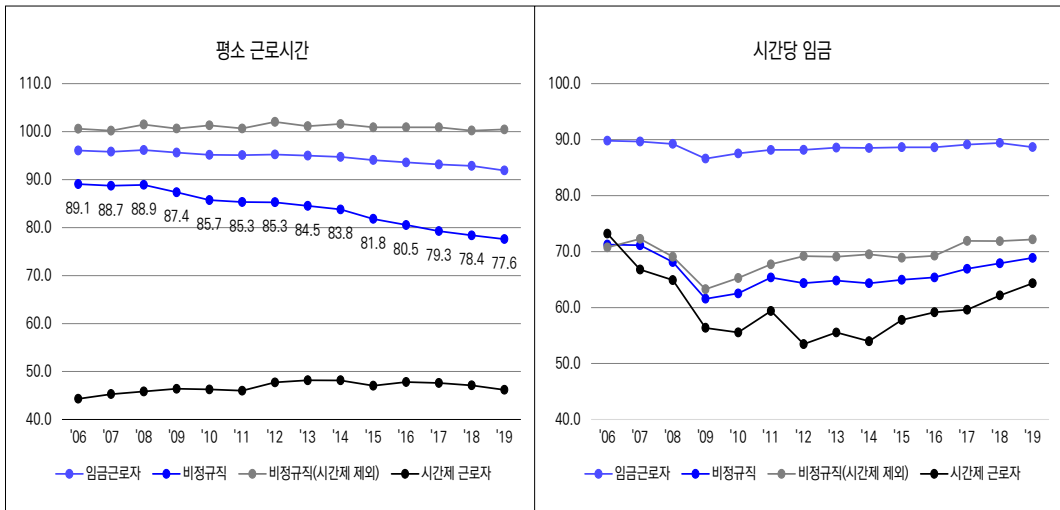
기간제 근로자가 초과관찰되어 기존 비정규직 임금수준의 개선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짐을 고려하여 기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년대비 10.6%로 크게 증가하고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역시 개선이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임금근로자의 평소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이하 근로시간)⁵⁾은 39.8시간으로 전년대비 0.6시간 감소하여 40시간 미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43.3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0.5시간 감소하면서 비정규직에서의 근로시간 감소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정규직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20.0시간으로 전년대비 0.5시간 감소하면서 전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⁶⁾

[그림 6] 비정규직 상대근로시간과 상대임금 수준 추이

(단위 : %)



주 : 정규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100으로 함.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5) 고용형태별 부가조사가 이루어진 8월의 조사기간 기준 실제로 근무한 시간(실제 근로시간)은 35.9시간으로 전년대비 0.7시간 감소하였다.

6) 2018,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월평균 27만 원의 임금을 받는 공익활동 참가자의 경우 대부분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이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경우 상대임금 수준이 2017년 이후로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전형 근로와 반복갱신 근로자의 임금 증가 및 하락이 변갈아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개선이 기간제 근로자가 초과관측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Juhn, Murphy, & Pierce(1991) 및 정성미·성재민(2014)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분해해 보았다. 임금격차분해(7)를 통해 시간에 따른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변화는 관찰된(Predicted) 요소의 분포(Quantities)변화와 가격(Prices)변화, 관찰되지 않은(Residual) 요소의 분포변화와 가격변화의 4개 요소변화로 분해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분포변화는 노동시장의 연령대별, 성별, 학력별 내에서 비정규직의 분포가 변화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관찰된 요소의 가격변화는 같은 분포의 근로자끼리의 임금차이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나타낸다면 임금차별로 인한 차이의 원인으로 어느 정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플러스(+)가 된다면 제도 개선과 정책 등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관찰되지 않은 요소는 전체 임금격차의 변동 중 관찰된 요소를 제외하고 남은 차이를 의미하는데 데이터에서는 구분이 될 수 없는 미관찰 요소, 흔히 ‘스펙’이나 ‘근무의욕’과 같은 개별적 요소로 인한 분포변화와 가격변화를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서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각각 연도, 정규직 여부별로 분석하는데 로그화된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에 넣고, 연령별(연령 제곱 포함), 성별, 학력별, 근속연수(더미) 등 기본적인 가구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넣은 뒤 종사상지위, 종사 산업(산업대분류 더미), 직종(직종대분류 더미)과 같은 직업적 특성을 추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 전년보다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6%p(로그 포인트 기준) 개선되어 2017년의 1.3%p보다 개선의 정도가 나아졌는데, 통제변수의 구성변화로 정규직·비정규직 내의 연령, 성별 분포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임금격차가 커지는 데 영향을 주었으나,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차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이 증가하거나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 등의 노력으로 임금격차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을 추가함에 따라서 직업적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임금격차는 벌어지지만 미관측된 분포변화는 임금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7) 아래의 4개 선형회귀함수를 일종의 다중차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의 변화를 보면, 본문에서 설명한 4개의 요소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 회귀식의 추정결과는 원고 분량상 생략하였다.

$\ln_wage = f(\text{성별, 연령, 학력, } \dots + \text{직종, 산업, 지위})$ if 정규직and기준연도

$\ln_wage = f(\text{성별, 연령, 학력, } \dots + \text{직종, 산업, 지위})$ if 비정규직and기준연도

$\ln_wage = f(\text{성별, 연령, 학력, } \dots + \text{직종, 산업, 지위})$ if 정규직and비교연도

$\ln_wage = f(\text{성별, 연령, 학력, } \dots + \text{직종, 산업, 지위})$ if 비정규직and비교연도

〈표 9〉 시기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시간당 임금)

		통제변수의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통제변수의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임금격차 개선
2016. 8~ 2017. 8	연령 · 성 · 학력 · 근속	-0.015 (-116.8%)	0.021 (161.1%)	0.000 (-0.2%)	0.007 (55.9%)	0.013
	+ 직업 · 산업 · 종사지위	-0.021 (-163.2%)	0.027 (209.5%)	0.001 (5.3%)	0.006 (48.3%)	0.013
2017. 8~ 2018. 8	연령 · 성 · 학력 · 근속	-0.015 (-92.1%)	0.045 (278.8%)	-0.013 (-79.3%)	-0.001 (-7.4%)	0.016
	+ 직업 · 산업 · 종사지위	-0.024 (-145.3%)	0.017 (101.6%)	0.026 (158.3%)	-0.002 (-14.6%)	0.016
2018. 8~ 2019. 8	연령 · 성 · 학력 · 근속	-0.012 (-476.1%)	0.011 (458.0%)	-0.009 (-376.1%)	0.012 (494.3%)	0.002
	+ 직업 · 산업 · 종사지위	-0.017 (-692.9%)	0.029 (1,199.6%)	-0.016 (-662.8%)	0.006 (256.1%)	0.002
2018. 8~ 2019. 8	연령 · 성 · 학력 · 근속 (기간제 제외)	-0.006 (-24.8%)	0.019 (79.3%)	0.002 (7.4%)	0.009 (38.1%)	0.023
	+ 직업 · 산업 · 종사지위 (기간제 제외)	-0.009 (-38.9%)	0.044 (187.3%)	-0.014 (-59.5%)	0.003 (11.1%)	0.023

주: STATA 15.1 기준 jmpierce2 명령어(User Written Comm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러나 2019년 들어 0.2%p 개선되는 것에 불과했는데, 통제변수의 가격요인으로 인한 개선의 정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초과관측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내의 분포가 크게 바뀌면서 통제변수의 분포요인으로 크게 낮아져 전체 임금개선의 4.76배만큼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분석모형에 직업적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뿐만 아니라 미관측 요소의 구성변화 부분도 더욱 낮아지면서 총 가격효과의 개선을 가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임시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데이터에서 설명되지 않지만 열악한 상태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분류되었다가 올해 들어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초과관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임금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서 기간제를 제외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작년보다 개선된 2.3%p만큼의 임금격차가 감소했는데, 통제변수의 가격변화와 구성변화 모두 기간제를 포함한 결과보다 임금격차의 개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내의 분포가 바뀌어 나타나는 효과가 전체 임금개선의 25~39%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같은 개선이 실제로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기간제의 초과관측으로 인해서 희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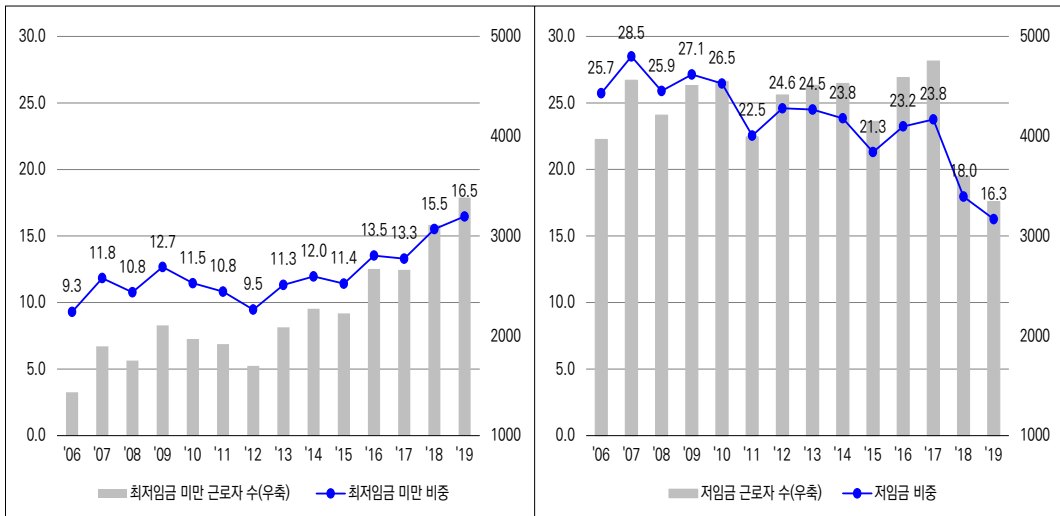
2. 저임금 및 최저임금 근로자의 추이와 근로조건 변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은 2018년에 이어서 최저임금의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을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월 평균임금과 평소 근무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을 받는 근로자는 339만 명으로 전년대비 28만 명 증가하여 그 비중이 16.5%로 상승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서 경제활동참가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60세 이상 154천 명 증가)했다. 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15~29세 79천 명 증가)도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간당 임금 기준 중위소득⁸⁾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년에 이어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저임금근로자는 334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25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0%를 상회하던 2017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는 2018년 18.0%에서 2019년 16.3%로 비중이 줄어

[그림 7]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저임금근로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주: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매년 고시되는 시간당 최저임금(2019년 8,350원)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8)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상 시간당 임금의 중위임금(가중치 적용)은 2019년 기준 12,434원(2018년 11,513원).

〈표 10〉 근로형태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저임금근로자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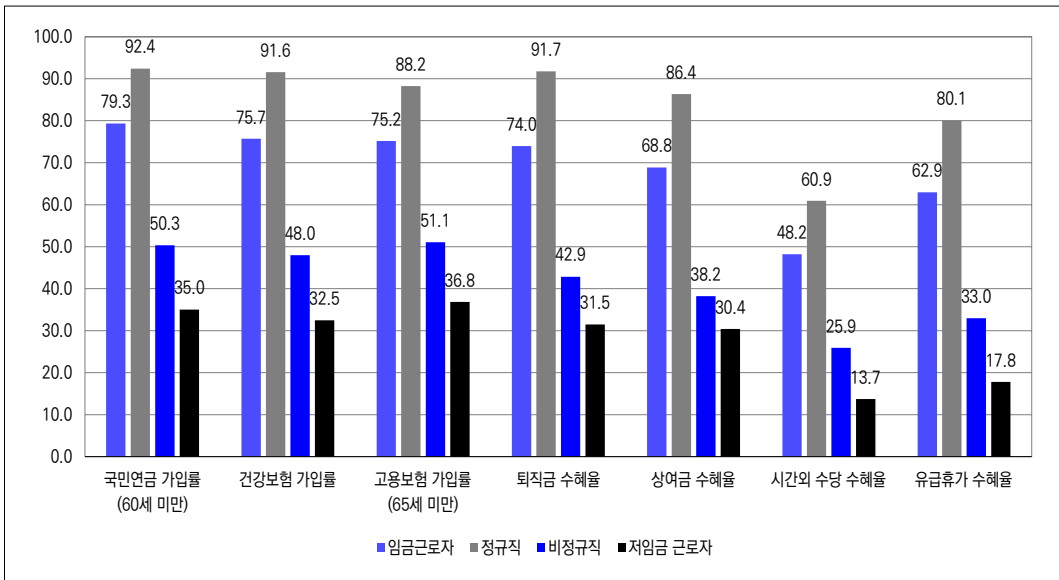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수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임금근로자	2,661 (13.3%)	3,111 (15.5%)	3,386 (16.5%)	4,753 (23.8%)	3,599 (18.0%)	3,345 (16.3%)
정규직	935 (7.0%)	1,146 (8.5%)	1,049 (8.0%)	1,978 (14.7%)	1,351 (10.1%)	1,031 (7.9%)
비정규직	1,726 (26.2%)	1,964 (29.7%)	2,336 (31.2%)	2,775 (42.2%)	2,248 (34.0%)	2,314 (30.9%)
한시적 근로자	861 (23.1%)	1,018 (26.6%)	1,351 (28.2%)	1,438 (38.6%)	1,140 (29.8%)	1,336 (27.9%)
비전형 근로자	507 (24.0%)	608 (29.4%)	612 (29.9%)	827 (39.2%)	677 (32.7%)	600 (29.3%)
시간제	1,110 (41.7%)	1,147 (42.4%)	1,498 (47.5%)	1,621 (60.8%)	1,343 (49.6%)	1,493 (47.3%)
비정규직 청년 (15~29세)	426 (31.9%)	422 (33.1%)	539 (35.6%)	679 (50.8%)	497 (38.9%)	535 (35.4%)
비정규직 고령층 (60세 이상)	726 (47.7%)	786 (47.7%)	969 (50.0%)	960 (63.0%)	859 (52.1%)	961 (49.6%)

주 : () 안은 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8〉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복지수준(2019년 8월)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들었다. 정규직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0.1%에서 7.9%로, 비정규직은 34%에서 30.9%로 모두 저임금근로자가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9.8%에서 27.9%로 감소했으며 시간제(49.6→47.3%), 비전형 근로자(32.7→29.3%)의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국민연금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⁹⁾과 복지혜택(퇴직금수혜율, 상여금수혜율, 유급휴가수혜율, 시간외수당수혜율)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전년보다 가입률이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처음으로 50%를 넘게 나타났다. 지난해 감소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던 복지혜택 수혜율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이 90% 내외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V. 맺음말

국제 종사상지위 개편 병행조사로 기간제는 증가했으나, 한시적 근로의 반복갱신·기대불가나 용역 파견에서 기대된 것보다 변화가 없었다. 아마도 기존 조사 관행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 같은데, 향후 통계청은 기존에 어떻게 비정규직들이 조사되고 있었는지, 병행조사는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고, 이번 병행조사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병행조사 원시자료를 기존 8월 부가조사에 붙여서 공개해 전문 연구자들과 관련 부처가 새 종사상지위로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나아가 발전적으로 제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관찰됨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근로조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대임금수준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정규직 중 일부가 비정규직이 되면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기술적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주 52시간 근로상한 적용에 따른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시간당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임금격차 수준의 변화는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관측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통계가 나타났으나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볼 경우 임금격차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KLI**

9) 사회보험의 가입연령을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18-59세가 가입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부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은 가입연령제한이 없다.

[참고문헌]

정성미·성재민(2014),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2013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60~77.

Juhn, Chinhui, Kevin M. Murphy, Brooks Pierce(1991), “Accounting for the Slowdown in Black-White Wage Convergence,” in Marvin Koster(ed.), *Workers and Their Wages*, Washington, DC: AEI Press, pp.107~143.